
효율적 중재진행을 위한 당사자의 의무 고찰 -2017영국중재법을 중심으로-

최병권

경남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부교수

Study on Parties' Duties for Efficient Arbitration Proceeding under the English Arbitration Act

Byoung-Kwon Choi^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Ky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1 February 2020, Revised 25 February 2020, Accepted 26 February 2020

Abstract

The parties shall perform all actions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xpeditious conduct of arbitral proceedings. This includes complying without delay with any determination of the tribunal as to any and all procedural or evidential matters, or with any order or directions of the tribunal, and where appropriate, taking without delay any necessary steps to obtain a decision of the court on a preliminary question of jurisdiction or law.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of the tribunal in case of a party's failure to do something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xpeditious conduct of the arbitration. The parties' general duty may be based on agreements, such as the duty not to ask the court for a dispute, the duty to carry out arbitral awards, and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n this study, as a premise, after confirming the discussion related to Article 40 (general obligations of the parties) of the law, the arbitral tribunal will analyze the authority to execute it based on Article 41. As a matter of fact, in LMAA Terms 2017, the parties want to analyze what is required in order to proceed effectively.

Keywords: UK Arbitration Act, Arbitral Proceeding, Duty of parties, LMAA Terms 2017

JEL Classifications: F10, J52, K12, K33, P45

^a First Author, E-mail: nangak@kyungnam.ac.kr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재가 소송과 비교하여 적절한 중재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중재의 절차규칙과 증거규칙이 비교적 엄격하지 아니하여서 중재당사자가 절차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Lee Ki-Soo and Shin Chang-Seob, 2015, 50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당사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사전에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고,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지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재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중재 비밀의 준수도 보장된다고 중재당사자가 간주하기 때문이다(Park Chan-Dong and Shin Chang-Seob, 2016, 1).

한편 중재절차상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중재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나, 1995년 호주의 *Esso v. Plowman* 사건판결¹⁾ 이후 특히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중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Reuben, 2006, 1256; Smeureanu, 2011, 2).

당사자의 전반적인 의무로서는 합의에 기초한 의무로서 분쟁을 법원에 부탁하지 않는 의무²⁾, 중재판정을 이행할 의무, 비밀유지의무³⁾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1996년 영국 중재법(이하, 영국중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기초한 중재절차에 관한 의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0조(당사자들의 일반적 의무) 제1항은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행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제2항은 이 의무에는, 제(a)호 절차 또는 증거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지체없이 따를 것, 제(b)호 관할권 또는 법적 문제(제32조와 제45조)에 관한 쟁점에 대해 법원의 사전판단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수행할 것을 포함한다.

제40조 제1항은 절차의 효율성을 피하는 중재판정부의 의무(제33조 제1항 제(b)호)와 마찬가지로 중재의 목적은 공평한 중재판정부에 의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회피하여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영국중재법 제1조 제1항 제(a)호의 결말이다. 이로 인해 강행법규이며 당사자의 합의를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이것은 UNCITRAL 모델 중재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영국중재법의 특징적인 규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재법 제40조는 위반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재판정부의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해임(제24조)과 중재판정이의(제6조 제2항 제(a)호)가 강행법규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사실상 제40조 위반의 제재는 당사자의 해태의 경우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제41조)과 의의신청권의 상실(제73조)이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Saville, 1997, 276).⁴⁾ 그러나 ① 제41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제41조 제1항), ② 그 권한행사의 종결이 절차보장의 관점에서 다소 가혹하기 때문에 권한의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 ③ 그 권한을 발동하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진행을 재촉하는 것 등에서 절차의 효율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41조가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Ambrose et al., 2017, 14, 10,

목시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

4) *Elektrim SA v. Vivendi Universal SA* [2007] 1 Lloyd's Rep. 693.

1) *Esso v. Plowman* [1995] HCA 19, XXI Y.B. Comm. Arb., 1996, 137.

2) *Associated Electric Gas Insurance Services Ltd v. European Reinsurance Company of Zurich* [2003] UKPC 11 ; LCIA 규칙 제26조 제8항과 ICC 규칙 제34조 제6항.

3) 영국중재법은 비밀유지의무와 비공개원칙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입법적 불비가 중재에서 비밀유지가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단지 중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예외사항과 제한으로 인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범조문에 포함시키는 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안을 심의한 자문위원회(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는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판례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였다(Park Chan-Dong and Shin Chang-Seob, 2016, 1-27). LMAA Terms 2017 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규칙에서는 당사자간에

14.15).

본 연구에서는 그 전제로서 강행법규인 제40조(당사자의 일반의무)와 관련된 논의를 확인한 후 중재판정부가 제41조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 문제로서 LMAA Terms 2017에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1. 일반적 의무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 보면 중재의 경우 심리가 비공개 하에 이루어지고 제출되는 각종 서면이나 중재판정문 또한 비공개인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내용의 본질상 비밀유지가 특히 중요한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공개 원칙이 비밀의 유지를 항상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중재기관의 규정에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⁵⁾ 그와 같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려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재의 경우 분쟁관련 정보의 비밀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비공개가 국제중재의 일반적 관행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공시의무 등으로 인해 분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문에 정보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서 비밀유지의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Ko Hak-Soo, 2004).

우리 중재법에서는 중재절차의 비공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재기관 중재규칙에는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에 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의 심리기일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ICC 중재규칙 제26(3)조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개정국제중재규칙 제30조 제2항, 그리고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명시한 KCAB의 개정국제중재규칙 제57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재기관의 규칙이 중재기관 사무국이나 중재인들이 해당 중재와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사자들에게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ICC 중재규칙도 그중 하나이다. 물론 상항회사의 경우 특정금액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강행규정에 따라 해당 분쟁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전략적인 의도로 분쟁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중재절차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류들을 중재절차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중재는 비공개성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이유로 중재절차에서 현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이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항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비밀준수의무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면, 중재절차 초기에 분쟁 당사자들 간 별도의 비밀유지 약정을 통해 보호될 정보의 범위 및 공개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합의하고 부당하게 누설할 경우의 제재수단 등을 약정하는 방안이 있다. 실무상 더욱 흔히 볼 수 있는 수단으로는 양 당사자가 비밀유지 범위와 의무를 적시한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ity Order)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CC 규칙 제22(3)조에서 규정하는 ‘measur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5) ICC와 ICDR의 중재규칙에는 당사자들에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LCIA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LCIA 중재규칙 제30.1조, 30.2조 및 30.3조 참조(Ko Hak-Soo, 2004).

information'이 그 경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중재판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 처럼 위반 당사자에게 비밀유지를 강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중재판정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우려로 인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위 사안의 경우, 중재는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원칙에만 의존하여 중재절차 중 현출된 자료에 대해 당연히 당사자들 간 비밀준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는 B와 별도로 비밀준수약정을 하거나 중재판정부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2) 영국중재법

영국 중재법 제4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로서 당사자들은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당사자 간에 협력하거나 또한 중재판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Pendell and Huard-Bourgois, 2013, 17.50, 17.53; Mustill and Boyd, 2001, 32.37; Andrews, 2016, 6.19). 즉, 당사자자치를 이유로 비효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의무로 인해 그 외연(外緣)은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제41조 제2항이 의무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제41조 제2항 제(a)호는 확인적 규정이며 또한 제41조 제2항 제(b)호가 독립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드물다.

제40조 제2항 제(a)호에 관해 당사자들이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제34조 제2항에 열거하는 절차와 증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제34조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Saville, 1996, 277).⁶⁾ 그 같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제41조에 기초한

6) LMAA Terms 제14조 제a항에서는 절차와 증거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광범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도 중재판정부의 해당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제42조).

제40조 제2항 제(b)호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과 법률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중재절차 중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제32조)과 중요한 법률문제(제45조)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이들의 사항을 이유로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중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용없기 때문에 법원이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신청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제32조 제2항 제(b)호 제(ii)목, 제45조 제2항 제(b)호 제(ii)목). 또한 제32조에 기초한 신청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며(제32조 제2항 제(a)호), 해당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다.⁷⁾ 더욱이 제45조에 기초한 신청권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⁸⁾

2. 중재절차 위반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중재합의가 그 성질이 사법계약인 이상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거나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⁹⁾로 하여

7) 제32조 제2항 제(b)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한정적이다(ABB Lummus Ltd. v. Keppel Fels Ltd. [1999] 2 Lloyd's Rep. 24).

8) 법 적용의 오류에 의한 상소권(제69조)을 합의로 배제하고 있을 때는 제45조의 신청권도 배제하는 것이 된다(Ambrose et al., 2017, 16.12). 또한 LMAA 규칙상 제69조의 상소권을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LMAA Terms 2017 para.24(b)(원칙적으로 포기하지 않지만 포기가능), LMAA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 2017 para.14(부분적 포기), LMAA Small Claims Procedure 2017 para.4(완전포기), LMAA FALCA Rules para.19(완전포기) 참조.

9) 대결 1968.6.29., 98마863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서 서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¹⁰⁾ 이 취지는 중재합의를 맺는 경우에도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관여하는 경우, 개인기업과 독점기업, 대리점과 상인, 판매상인과 제조업자와의 관계 등 한 쪽 당사자가 그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합의를 맺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인이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든가, 중재절차에 들어간 분쟁에 관하여 자기의 중재판정 권한이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도 중재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중재절차에 들어간 분쟁에 관하여 법원이 중재합의를 간과하거나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중재합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제소된 사건에 관하여 비록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 까지 중재합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응소하면 중재합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중재합의도 그 성질이 사법행위이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중재합의는 실효된다. 그 외에 중재합의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가능하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우리 중재법 제35조) 합의해제는 판정후의 새로운 사정이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거나 집행판결

을 받은 경우(우리 중재법 제37조 제1호)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합의해제는 할 수 없다. 또한 중재합의의 효력 상실에 관한 분쟁은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심판하여야 한다. 즉, 소가 제기되어 본안에 관한 심리가 진행될 때 그 전제로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한다.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효력 상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영국중재법

영국 중재법 제33조(중재판정부의 의무)와 제40조(당사자들의 의무)는 제1조 제1항 제(a)호의 종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반에 의한 중재판정이의는 제40조 위반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 그리고 제40조의 의무를 중재합의에 기초한 묵시적 의무라고 보고 그리고 절차지연을 중재합의의 이행거절로 파악하는 것에서 중재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거나¹¹⁾ 그렇게 하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에서 중재판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33조의 위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제40조에 기초한 의무는 제정법상의 것이며 중재합의에 기초한 묵시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40조의 위반이 있으면 중재합의의 해제가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규정한 절차 중에서 처리되게 된다.¹²⁾ 그러하다면 제40조 위반은 법문상 중재판정부가 제41조에 기초하여 대처하게 된다.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 관할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보다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10)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결 2009. 11. 13, 2009마1482; 대결 2008.12.16., 2007마1328 참조).

11) 제40조 위반의 제제로서 금전배상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Mustill and Boyd, 2001, 64, 316-317). 중재합의도 계약법의 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재합의를 이행거절로서 해제할 수 있다(Stutton et al., 2015, 2-136, 5-235). 계약법에서 중재절차의 지연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제41조에 기초하여 절차법상의 구제조치가 있다(Merkin, 2018, 16.7, 16.19).

12) Elecktrim SA v. Vivendi Universal SA [2007] 1 Lloyd's Rep. 693.

Ⅲ. 당사자의 해태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

1. 의무의 해태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대한상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9조(의무의 해태)는 피신청인이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적법하게 심리에의 출석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당사자가 서면증거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영국중재법

영국 중재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게 여러 해태가 있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3항-제7항). 다만 임의규정이며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지만(제41조 제1항), LMAA Terms 2017에서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41조(당사자의 해태의 경우의 중재판정부의 권한) 제1항은 당사자들은 중재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당사자가 행하지 않은 경우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제2항은 양당사자에 의해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래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3항은 신청인 측에 자기의 신청을 수행할 때에 현저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체가 있는 경우와 그 지체가, 제(a)호 해당 신청에서의 쟁점의 공평한 해결이 불가능이 될 상당한 우려가 발생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제(b)호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할 때 중재판정부

는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4항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제(a)호 적정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아니할 때 또는 제(b)호 서면에 의해 안전에 대응할 때에 서증 또는 준비서면의 제출을 구하는 통지 후에 그들을 제출하지 않을 때, 중재판정부는 해당 당사자가 결석한 상태에서 또는 해당 당사자로부터의 서증 또는 준비서면없이 절차를 속행하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5항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중재판정부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중재판정부는 해당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확정적 명령(peremptory order)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에 중재판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6항은 신청인이 중재비용의 담보제공의 확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7항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내린 확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제42조(법원에 의한 중재기관의 확정적 명령의 집행)의 규정과는 달리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어느 것인가를 행할 수 있다. 제(a)호 해태한 당사자에 대해 명령의 대상인 주장 또는 사항에 의거할 수 없는 취지를 지시하는 것, 제(b)호 사정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추진하는 것, 제(c)호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제출되었다고 간주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것, 제(d)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한 중재비용의 지급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상당하다고 판정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다.

2. 신청인의 절차 불이행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¹³⁾ ① 신청인에 현저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연(inordinate and inexcusable

delay)이 있는 것, ②-1 해당 지연에 의해 분쟁의 공정한 해결(fair resolution)이 불가능하게 될 상당한 우려 또는 ②-2 해당 지연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불이익(serious prejudice)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것이 발동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신청인이 협상수단으로서 중재를 신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화해에 불응하고 또한 증거 상에도 신청인에 있어 불리하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중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을 때이다. 그 경우라도 증거의 인멸과 비용의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절차를 정식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Merkin, 2018, 16.1). 또한 신청인에게 반대신청을 하는 신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제82조 제1항), 중재판정부는 이 신청을 남기고 반대신청만을 각하할 수 있다.¹⁴⁾ 또한 이 권한을 행사할지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이며 가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신청각하보다도 가벼운 판정을 내리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재비용의 분담과 지연이자의 계산에 있어 지연을 야기한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려도 된다.¹⁵⁾

우리 중재법 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는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국중재법

중재판정부가 제4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신청각하판정을 내린 사례로서 4건이 보고되고 있으며,¹⁶⁾ 이 중 3건은 해상중재사건이다.¹⁷⁾ 이 3건 중 K-Amber호 사건(2017)¹⁸⁾과 Labhauled

16) 또한 1950년 영국중재법 제13A조에 기초하여 신청각하 판정을 내린 해상사건으로서 London Arbitration 20/05(2005) 676 LMLN 3(2)가 있다.

17) 3건의 해상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해사사건도 소개하고 있다(TAG Wealth Management v. West [2008] 2 Lloyd's Rep. 699). 위임자(신청인)는 수입자가 위임자에게 인도해야 할 것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2년 1월에 중재를 신청하고 수입자(피신청인)도 수당의 지불을 구하여 반대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직후부터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라 증거고지가 이루어졌지만 신청인의 고지가 늦게 되어 절차가 지연되었다. 더욱이 2007년 5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절차중임에도 불구하고 폐기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제41조 제3항에 기초한 신청각하의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판정부에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2008년 2월 신청인의 청구가 6년의 제소기간을 경과하고 있으며 지체가 현저하게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인정하였다(①). 그리고 증거의 폐기에 의해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②-1), 또한 신청인이 과대한 청구를 하는 것에서 피신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②-2)을 이유로 각하중재판정을 내렸다. 이 중재판정에 대해 고등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을 중시하여 법 적용의 오류에 의한 상소(제69조)를 배척하고 중대한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제68조)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다.

18) K-Amber호 사건은 2010년 8월 선주가 해적리스크를 이유로 호주에서 동아프리카까지의 항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용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1년 7월에 중재를 신청한 사안이다. 선주는 2011년 10월에 중재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절차가 단속적으로 지체되었지만 선주의 경제상황악화가 알려지게 되어 2016년 2월 용선자는 선주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제공되지 않을 때는 선주보유의 선박을 가압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래서 선주는 1척이라도 가압류되면 채권자단과의 협상이 파탄될 우려가 있는 것에서 2016년 9월에 담보를 제공하였다. 그 즈음 절차는 증거고지의 단계에 이르고 또한 6년의 제소기간도 경과하고 있었다. 2017년 1월에 선주는 제41조 제3항에 기초한 신청각하를 구했다. 중재판정부는 2017년 7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신청각하를 인정하였다. 우선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현저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체가 4년 동안 특히 2016년 4월부터 2017년

13) 제41조 제3항은 1950년 영국중재법 제13A조를 계수하는 규정이다(다만 제13A조의 시행은 1992년이다). 그 제13A조는 당시의 재판절차를 중재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41조 제3항의 적용기준·해석도 당시의 재판절차상의 규율에 따른다(Tweeddale and Tweeddale, 2010, 23.64-23.76 ; Merkin, 2018, 16.20-16.25).

14) Dera Commercial Estate v. Derya Inc (The Sur) [2018] EWHC 1673 ; Midnight Marine Ltd. v. Thomas Miller Speciality Underwriting Agency Ltd (The Lavhauled) [2018] EWHC 3431 (Comm).

15) Grindrod Shipping v. Hyundai Merchant Marine (The K-Amber) [2018] 2 Lloyd's Rep. 121.

호 사건(2018)¹⁹⁾에서 고등법원은 각하 판단을 지지하였지만, Sur호 사건(2017)²⁰⁾에서는 중재

1월에 용선자는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뿐이었다. 더욱이 위의 요건(②-2)이 인정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지연이 없었다면 2016년에 선주가 경제적 곤란에 빠지기 전에 2013년 중이거나 늦어도 2014년에는 해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선자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선주는 이것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장기의 지연에 의해 중재비용이 방대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연과 선주의 경제적 불이익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요건(②-1)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주는 지연에 의해 증인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선장의 증언을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하고 전문가 증인이 사망하여 필요한 항해기록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평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증거에 기초한 판단은 아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중재판정에 대해 고등법원은 법 적용의 오류에 의한 상소(제69조)와 중대한 절차 위배에 의한 이의(제68조)도 부정하였다(Dunlop, 2019).

- 19) Labhauer호 사건에서 부선인 본선은 카리브해에서 캐나다까지 화물을 적재하고 예방되고 있었는데, 2007년에 전복되어 화물이 멸실된 사안이다. 부선은 화물배상을 함과 동시에 에인선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으로서 캐나다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에인선 측은 보험계약의 런던중재조항에 기초하여 캐나다법원에 절차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여 런던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인도 선정하였다. 부선에 의한 중재인 선정은 캐나다법원의 판단의 뒤에 이루어진다고 합의되었다. 2010년 10월 캐나다법원은 절차정지를 인정하였지만 중재절차는 방치되게 되어 2017년 7월이 되어 부선은 중재인을 선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부선이 청구한 제소기한은 이미 도과하고 있다고 확인할 판단을 내렸다(에인선측이 중재를 신청해도 부선 측의 권리에 대해 제소기간은 진행된 상태로 되었다). 그리고 제소기한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선 측이 반대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제41조 제3항에서 각하중재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등법원은 해당 판단에 대한 상소·이의를 각하하였다.
- 20) Sur호 사건은 고등법원이 제41조 제3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최초의 사안이다. 본선이 곡물을 인도에서 요르단까지 운송한 바 2011년 8월 양륙지의 세관은 화물의 상태를 이유로 양하역을 허가하지 않았다. 화주는 화물손해배상을 구하여 요르단에서 재판절차를 개시하였기 때문에 선주는 9월 중재조항에 기초하여 런던중재를 신청하고 또한 소송중지 명령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절차는 중재로 통합되었다. 화주가 양륙허가를 세관에 청구한 바 11월 선주는 세관과 화주의 양해를 받지 않고 본선을 터키로 이동시키고(이로) 터키법원의 명령에 기초하여 화물을 처분하였다. 그 후 양당사자는 중재인만 선

판정부에 심리불충분이 있다고 하여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반려했다. 이들의 사례에서는 현저한 지연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채권의 제소기한(계약채권은 6년, Hague 규칙에 따르는 채권은 1년)을 초과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²¹⁾ 이로 인해 신청이 각하되어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제소기간이 경과하고 있을 것이므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구술심리의 결석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는 독립적인 심리실에서 진행되며,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구술심리로 진행되는데(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2조 제2항),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중재신청의 내용과 근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의 입장을

정했을 뿐이지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2015년에 선주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여 신청서(claim submission)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화주도 반대신청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선주는 화물청구는 Hague규칙상의 1년의 제소기한에 따르기 때문에 화주는 지금이 되어 청구의 상세(particular)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신청의 각하를 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중재가 제기된 후 1년이 경과하여 그 지연의 원인은 화주의 경제사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저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연을 인정하였다(①). 그리고 그 지연에 의해 중요한 증거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건(②-1과 ②-2)도 충족한다고 하여 각하중재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로의 법적 효과로서 선주는 1년의 제소기한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경우의 제소기간은 6년) 그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인지(즉, 선주에게 지리적 이리가 있으며 또한 화주는 지리적 이리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인지)를 심리하게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게 사건을 반려했다(제69조 제7항 제(c)호)(Semark, 2019).

- 21) Birkett v. James [1978] AC 297, 320 ; Trill v. Sacher [1993] 1 WLR 1379, 137. 또한 지상조항(paramount clause)에서 제소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증명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데(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2조 제4항), 당사자가 심리기일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 다음 심리기일 전까지 이를 준비하겠다고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다만,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원인이 불분명하여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한다(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으나(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3조 제2항),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절차의 당사자로서는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영국중재법

영국 중재법상 중재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양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고 또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방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며, 중재합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보내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않고(제41조 제4항 제(a)호) 또한 서면심리를 할 때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때(제41조 제4항 제(b)호),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참여만으로(ex parte)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중

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25조 제1항 제(c)호를 근거로 한다(Saville, 1997, 208).²²⁾

다만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수단으로 볼 수 있다(Saville, 1997, 209).²³⁾ 그리고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때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연기하고 당사자에게 사정을 물어야 하는 것이 된다(Sutton et al., 2015, 5-196). 또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의 결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재법도 예상하고 있다(제72조). 그러하다면 해당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결석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제31조 제4항), 그래도 해당 당사자가 결석할 때에 제41조 제4항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진다(Tweeddale and K. Tweeddale, 2010, 23.0).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대해 결석 당사자가 반론을 추가하지 않을 때 중재판정부는 그들의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통상대로 그러한 주장과 증거의 신용성을 음미해야 한다(Sutton et al., 2015, 5-197).²⁴⁾

- 22) 우리 중재법 제24조(심리)와 일본 중재법 제33조 제3항 참조. 또한 실무에 대해 영국중재인협회(CI Arb)에 의한 지침("Part Non-Participation")이 유익하다.
- 23) 일방당사자가 결여한 상태에서 구술심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중대한 절차 위배가 없었다고 본 사례로서 Konkola Copper Mines plc v. U&M Mainlining Zambia Ltd (No.2) 사건([2014] 2 Lloyd's Rep. 649)이 있다.
- 24) 재판상의 결석판결과는 다르다(Ambrose et al., 2017, 14.10, 12.20). 실무상 피신청인이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신청인 제출의 서면과 증거도 중재판정 내리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추가주장을 요구하거나 다시 피신청인에게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4. 확정적 명령에 대한 비교

1) 한국중재법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항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위 선택적 중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게 된다.

2) 영국중재법

영국 중재법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예를 들어 2주간 이내에 서증을 제출하라고 당사자에게 지시하였지만(제34조 제2항 제(d)호)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없이 그 지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는 3일 이내에 서증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 서증에 의뢰할 수 없는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41조 제5항·제7항 제(a)호).²⁵⁾ 확정적 명령의 기능은

25) 확정적 명령(peremptory orders)은 준수되지 않았던 당초의 명령보다도 무겁게 되어서는 안되지만(Saville, 2019, 289) 기간제한이 무겁게 되는 것은 부득이하다(Sutton et al., 2015, 5-186). 또한 법문상 확정적 명령이라는 것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 위반에 의한 법적 효과를 근거로 하면 기술해 두는

그 위반이 있을 때 중재판정부는 제41조 제7항 제(a)-(d)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²⁶⁾ 이 같이 하여 중재판정부의 명령·지시에 실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재신청인에 대해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확정적 명령을 내린 때에는 별도의 규율이 있다. 즉, 그 제재로서 중재판정부는 각하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제41조 제6항). 당연히 그 제재는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LMAA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담보가 제공되기까지 중재절차를 정지시키는 것, 그 밖에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⁷⁾

또한 중재판정부 자신이 제재를 집행할 수 없으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제42조).²⁸⁾ 즉,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법원명

것이 바람직하다(CI Arb Practice Guideline 14; Guidelines for Arbitrators on how to approach an application for a Peremptory and "Unless" Orders and related matters(2011) [2.2.7]). 또한 본문과 같은 확정적 명령을 내린 중재인에 대해 편파를 이유로 해임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T v. V, W, A [2017] EWHC 565(Comm)).

26) T v. V, W, A 사건에 관해 고등법원은 해당 해임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해당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하였다. 그 후에 중재절차는 재개하였지만 중재인은 신청인에 대해 해당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인은 다시 확정적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도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인은 그때까지 제출된 증거만에 기초하여 중재판정을 내렸다(제41조 제7항 제(c)호). 신청인은 증대한 절차위배를 이유로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되었다(T v. V, W, A [2018] 2 Lloyd's Rep. 215).

27) LMAA Terms, para.16(c), First Schedule (E)(8). 각하중재판정이라는 제재는 가혹하지만(DAC Report, p.211) 법문에서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담보 제공까지의 절차정지만이라면 제공하지 않는 것에 의해 절차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I Arb Practice Guideline 14, para.4.2.2.; Sutton et al., 2015, 5-187). 그 결과 몇 년이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절차불이행을 이유로 신청각하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London Arbitration 20/05).

28) 법원에 의한 집행이 인정된 사례로서 Emmott v. Michael Wilson & Partners (No.2) 사건(2009) 1 Lloyd's Rep. 233(특정의 재산을 보전하는 취지의

령으로 격상시키고 그 제재를 법원모욕죄로 할 수 있다.

IV. LMAA Terms 2017에서의 당사자의 역할

1. LMAA Check List

당사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LMAA 체크리스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거기서는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만 커다란 주축으로서의 다음의 6가지이다. ① 구술심리를 생략하여 서면만의 심리로 할지의 검토,²⁹⁾ ② 증인과 그 진술서의 취급에 대해(진술서의 체재, 증인심리의 필요 여부, 주심리생략의 여부 등), ③ 전문가 증인과 그 의견서의 취급에 대해(대질의 필요 여부 등), ④ 구술심리에서의 서류의 취급에 대해(서류의 업선·체재, 중복방지 등), ⑤ 변론내용의 이용에 대해, ⑥ 증거의 등본 등의 취급에 대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촉자적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검토하고 또한 상대방과 조정·협력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에 위반하여 이유가 없는 비효율적인 대응을 하면 중재비용의 부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³⁰⁾

확정적 명령)과 Pearl Petroleum Company Ltd. v.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of Iraq 사건 ([2016] 1 Lloyd's Rep. 441)(현상유지를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확정적 명령)이 있다.

29) 서면심리를 채택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준비서면이 모두 제출된 후 중재판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LMAA 중재에서 서면심리는 넓게 이용되고 있다. LMAA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LMAA Terms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375건 중 구술심리가 열린 것은 85건뿐이었다(LMAA, 2019). 간단한 절차도 포함하면 전체의 80% 이상이 서면심리이다(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2019).

30) Second Schedule, para.19(b); Ambrose et al., 2017, 21.12, 21.13.

2. 진행표

우리 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5조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회의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또는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규칙상 서면의 교환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단독중재인인 때는 동일한 자가 선정된 때부터 복수중재인인 때는 2명째가 선정된 때부터 통상은 28일 이내에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³¹⁾ 그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통상은 그 후 2일 이내에 답변서를 또한 반대신청이 있으면 반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³²⁾ 다음으로 신청인은 반대신청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준비서면을, 만약 반대신청이 있으면 28일 이내에 해당 준비서면 외에 반대신청답변서를 제출한다.³³⁾ 그 이상의 서면의 교환은 그 이유를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³⁴⁾ 또한 서증도 이들의 서면과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한다.³⁵⁾ 서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서면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 않는다.³⁶⁾

31) Second Schedule, para.3.

32) Second Schedule, para.4.

33) Second Schedule, para.5.

34) Second Schedule, para.5.

35) Second Schedule, para.1(c).

서면심리가 없을 때는 최후의 서면이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LMAA 질문표³⁷⁾를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한다.³⁸⁾ 당사자는 거기서 열거된 질문사항에 답변하고 향후의 진행방법과 입증방법을 검토·정리하는 것이다. 그 답변사항은 다양하며 쟁점, 제쟁금액, 증거고지의 필요 여부, 증인과 전문가 증인의 역할, 구술심리의 일정, 중재비용의 건적, 조정의 가능성 등이다. 그 제출로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자는 절차의 진행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시하게 된다.³⁹⁾ 당사자간의 합의는 중재판정부의 지시·명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위반에는 제41조가 적용된다(즉, 확정적 명령이 나올 수 있다).⁴⁰⁾ 그 후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가 규정한 기간내에 증인의 진술서와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구술심리 때에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⁴¹⁾

이상의 진행표를 변경하도록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⁴²⁾ 또한 진행에 관해 중재인의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을 기안하는 시간도 문제가 된다.⁴³⁾

3. 준비서면과 증거의 취급

여러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보면 증거 제출이나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하여 선언적인 원칙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

는 규정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⁴⁴⁾ 그리고 중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상 해당 준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증거제출에 관한 절차를 정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를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사건의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가 증거의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⁴⁵⁾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용하게 되는 증거 입수 및 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당사자, 변호인, 중재판정부 등이 어느 법집행에 익숙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는 대륙법적인 요소와 영미법적인 요소를 절충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⁴⁶⁾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의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6조 제1항). 또한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외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36) Second Schedule, para.2.

37) Third Schedule.

38) Second Schedule, para.11(a).

39) Second Schedule, para.11(b).

40) Second Schedule, para.21.

41) Second Schedule, para.12.

42) Second Schedule, para.22.

43) 중재판정은 절차종료에서 통상 6주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지만, 그것을 대폭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판정공표까지 1년을 소요한 사례로서 BV Scheepswerf Damen Gorinchem v. The Marine Institute(The Celtic Explorer) 사건([2015] 2 Lloyd's Rep. 351)과 11개월을 소요한 사례로서 Action Navigation Inc v. Bottigliere di Navigazione SpA (The Kitsa) 사건([2005] 1 Lloyd's Rep. 432)이 있다.

44) ICC 중재규칙 제20조(Establishing the Facts of the Case); ICDR 중재규칙 제16조(Conduct of the Arbitration) 및 제19조(Evidence); UNCITRAL 중재규칙 제24 및 25조(Evidence and Hearings) 참조. LCIA 중재규칙은 서면 제출을 포함한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 편이다. LCIA 중재규칙 제14조(Conduct of the Proceedings) 및 제15조(Submission of Written Statements and Documents) 참조(Ko Hak-Soo, 2004).

45)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더하여 중재판정부가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ICC 중재규칙 제20.2조 및 제20.5조 ICDR 중재규칙 제19조 UNCITRAL 중재규칙 제24조 참조(Ko Hak-Soo, 2004).

46)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는 '국제상사중재상 증거입수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범'(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라는 별도의 모범규범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대륙법적인 요소와 영미법적인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Ko Hak-Soo, 2004).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더욱이 중재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7조).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 중재인 또는 중재인의 과반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6조 제4항). 또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나, 증거조사 외의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한편 LMAA Terms 2017에서는 당사자들은 준비서면에서 그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또한 페이지번호도 표시해야 한다.⁴⁷⁾ 답변서 이하의 준비서면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한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⁴⁸⁾

증거에 관해서는 LMAA 체크리스트와 중복된다. 당사자들은 구술심리를 생략하여 서면심리만으로 하는 것을 절차의 개시때부터 검토해야 한다.⁴⁹⁾ 당사자는 준비서면의 제출을 할 때 증거도 제출해야 하지만,⁵⁰⁾ 상대방은 미제출의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⁵¹⁾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외에 자기의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상대방의 주장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⁵²⁾ 당사

자간의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증인과 전문가 증인의 진술서로 주심리를 생략하는 것이 된다.⁵³⁾

4. 진행방법

당사자는 중재인과 당사자(또는 동일 그룹사 내 다른 회사 또는 중재 당사자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중재인과 중재 판정에 직접적 경제적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판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게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이나 법인간에 직·간접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중재인,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들 및 중재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기타 선임권한을 행사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에 출석하는 대리인의 신원과 그 법률자문인과 중재인간의 관계(동일한 법정 변호사 사무실 소속 여부를 포함한다)를 중재인,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들 및 중재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기타 선임권한을 행사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를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인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일반기준 제7(a)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확보가능한 정보 가운데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이해상충의 유무 및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중재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해상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중재인과의 어떠한 관계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공개는 중재인 선임 이후에 알게 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부당한 이의가

47) Second Schedule, para.1(a), (b). 또한 재판절차에서 장문의 준비서면을 페이지번호없이 제출한 것이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로서 Vincent Aziz Tchenguiz v. Grant Thornton UK LLP 사건([2015] EWHC 405(Comm))이 있다.

48) Second Schedule, para.6.

49) Second Schedule, para.1(a).

50) Second Schedule, para.1(c).

51) Second Schedule, para.8,9.

52) Second Schedule, para.9.

53) Second Schedule, para.2(d).

제기될 위험을 줄이게 된다. 당사자가 중재인과 당사자(또는 동일 기업 그룹 내의 다른 기업 또는 중재 당사자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갖는 개인)의 관계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중재 자금을 제공하는 자나 판정에 따라 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등 중재 판정에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법인 또는 자연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대리인, 즉 중재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자의 신원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점에 밝혀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대리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며, 절차 개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당사자들은 정보공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중재 당사자는 절차 개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중재의 모든 과정에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재인은 본 지침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진행에 관한 약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⁵⁴⁾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정·변경할 때는 신속하게 상대방과 중재판정부에 통지해야 하며 그 선정·변경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연기하게 하게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⁵⁵⁾ 진행에 관해 중재판정부의 지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신청 전에 상대방 당사자와의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⁵⁶⁾

V. 결론

영국 중재법 제41조에 기초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제재를 고찰했다. 제41조에 기초한 제

재는 신청각하중재판정을 내리는 것, 일방당사자의 관여 없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중재비용의 분담 등에서 고려할 것(다만 제41조 제7항 제(d)호뿐임)이었다.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배경으로 당사자에 의한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40조 제1항에서 당사자들은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40조의 검토로서 제41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당연히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은 당사자 자치 하에 법문이 아니라 중재규칙이 규율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LMAA Terms도 2017년에 개정함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가능한 비용효율이 높고 또한 효율적으로 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증인과 전문가의 준비, 서류의 사용, 변론내용, 증거의 등본 등에 관해 체크리스트기재의 지침을 참고로 해야 한다.⁵⁷⁾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 과거부터 당사자 간의 과도한 대립자세가 지적되고 있다.⁵⁸⁾ 즉, 당사자가 과도하게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쟁점정리·진행협의·증거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준비서면과 증거의 분량이 너무 많다거나 중재판정부가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

57) Second Schedule, para.13 ; 또한 그 밖의 국제상사 중재규칙에도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효율적인 절차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취지의 일반적 의무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있다(LCIA 규칙 제22조 제1항 ; LCIA 규칙 제14조 제5항) ; Blackaby and Partasides, 2015, 6.21).

58) Hamsher and O'Donovan, 2004 ; Bickford-Smith, Drake, Harris and Hook, 2013 ; Bulfracht (Cyprus) Ltd v. Bonaset Shipping Co Ltd, (The Pamphilos) [2002] 2 Lloyd's Rep. 681 ; 중재판정은 구술심리에서의 당사자의 행위를 "a complete travesty of the process of commercial arbitration, an exercise in mindless antagonism"이라고 부르고 본래적으로 단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682 col.2).

54) Second Schedule, para.16.

55) Second Schedule, para.20.

56) Second Schedule, para.14.

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과 당사자가 단독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로서는 진행에 관해 당사자 간에 협력하여 합의하는 것,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고지하는 것, 조정에 의한 해결을 논의하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에 대해 준비서면과 진술서의 분량을 제한하는 것, 진술서와 의견서를 필요한 것만으로 정리할 것, 기한 내에 제출할 것,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과도하게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원래 효율적 진행에 방해가 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중재비용의 분담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특히 LMAA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⁵⁹⁾ 즉, 주체적·적극적인 당사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구조로서 중재비용의 분담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LMAA Terms 2017에서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Aston, 2017). 이것이 영국법의 특징적인 제도설계일 것이다.⁶⁰⁾

더욱이 그래도 당사자에 의한 협력을 얻을 수 없을 때는 확정적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더욱이 법정모욕죄)를 배경으로 중재판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된다.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당사자의 의무에는 이 두 가지의 제도에 뒷받침된다.

LMAA 중재를 중심으로 효율적 진행을 추구하는 당사자의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구조를 보아 왔다. 그 중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중재 당사자와 대리인의 역할에 커다란 기대가 모아졌다. 당사자 대리인과 중재인이 법률가이더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당사 중재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영국 중재법과 LMAA Terms 2017에서는 중재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재법 등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양국의 법제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 중재법의 개정을 함에 있어 영국 중재법의 중재절차상 당사자의 의무를 참조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mbrose, C., et al. (2017), *London Maritime Arbitration*, 4th ed., London: Informa.
- Andrews, N. (2016), *Arbitration and Contract Law: Common Law Perspective*, New York City, NY: Springer.
- Aston, C. (2015), *A Look at the London Arbitration Scene*, London: LMAA, Available from <http://www.lmaa.london/Papers-from-Seminars.aspx>
- Aston, C. (2017), "Cost and Costs in LMAA Arbitration", Lecture in Shenzhen on 25 November 2017.
- Bickford-Smith, M., J. Drake, B. Harris and M. Hook (2013), *Ouch!-Costs in Shipping and General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A Joint CI Arb/LMAA Seminar, Available from <http://www.lmaa.london/uploads/documents/%20talk.pdf>

59) Second Schedule, para.2, 19(a), (b).

60) 비용분담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동을 촉진한다는 구성은 재판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며(CPR 44.2.(4), (5); Ambrose et al., 2017, 21.34), 그러하다면 이것은 영국법의 특징으로 보인다.

- Blackaby, N. and C. Partasides (2015),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2019), *The advantages of London ad hoc Maritime Arbitrations*, London: CI Arb Features, London: CI Arb, Available from <https://www.ciarb.org/resources/features/the-advantages-of-london-ad-hoc-maritime-arbitrations/>
- Denis-Smith, J. (2016), *When the Kings Departs: Costs and the Removal of an Arbitrator*, *Practical Law*, New York, NY: Thomson Reuters, Available from <http://arbitrationlog.practicallaw.com/when-the-kings-depart-costs-and-the-removl-of-an-arbitrator>
- Dunlop, H. (2019), *Can there ever be a bad time to demand the provisions of security*, London: Holman Fenwick Willan LLP, Available from <http://www.hfw.com/Can-there-ever-be-a-bad-to-demand-the-provision-of-security>
- Elsworth, T. (2017), “The Arbitrator’s Appointment-a frustrating business?”, Paper presented at ICMA X X, The Danish Institute of Arbitration.
- Hamsher, M. and P. O’Donovan (2004), *Pre-hearing Procedure in LMAA Arbitrations*, Hong Kong: The Journal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Available from <http://www.cannonway.com/web/page.php?page=113>.
- Kang, Soo-Mi (2006), “The Applicable Law to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16(2), 89-120.
- Kim, Young-Ju (2016), “The Employment Issue and Qualifications for Arbitrators : A Comment on Jivraj v Hashwani [2011] UKSC 40-”,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6(1), 29-51.
- Ko, Hak-Soo (2004),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Things to Consider When Entering Into International Contract”, *Human Rights and Justice*, 332, 118-135.
- Lee, Ki-Soo and Chang-Seob Shin (2015),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6th ed., Seoul: Sehang Publication.
- Lee, Won-Jeong and Sung-Ryong Kim (2012), “A Comparative Study on Small, Expedited Procedures of LMAA and KCAB in Maritime Arbi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34(1), 263-290.
- LMAA (2019), *Event*, London: LMAA, Available from http://www.lmaa.london/event.aspx?pkNewsEventID=208da443_7800_4720_84b3_7f4f3f5fc9ce
- Merkin, R. (2018), *Arbitration Law*, London: Informa.
- Mustill, M. J. and S. C. Boyd (2001),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Butterworths.
- Park, Chan-Dong and Chang-Seob Shin (2016), “A Study on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5(1), 1-27.
- Pendell, G. and J. Huard-Bourgois (2013),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and Counsel”, in Julian D. M. Lew, et al.(eds.), *Arbitration in English with Chapters on Scotland and Ireland*, Kluwer Law International.
- Practical Law Arbitration (1996), The 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Report on Arbitration Bill.
- Reuben, R. C. (2006), “Confidentiality in Arbitration: Beyond the Myth”, *Kansas Law Review*, 54, 1255-1300.
- Saville, M. O. (1997), 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1996 Report on the Arbitration Bill, *Arbitration International*, 13(3), 275-316.
- Semark, D. (2018), *Striking out Arbitration Claims for Wnt of Prosecution*, Available from <http://www.quadrantchambers.com/news/striking-out-arbitration-claims-for-of-prosecution-david-se-mark>

- Smeureanu, I. M. (2011),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ew York City, NY: Wolters Kluwer.
- Style, C. and P. Cleobury (2011), “Jivraj v. Hashwani: Public Interest and Party Autonomy”, *Arbitration International*, 27(4), 563-574.
- Sutton, D. S. J., et al. (2015), *Russell on Arbitration*, 24th ed., London: Sweet & Maxwell Ltd.
- Tweeddale, A. and K. Tweeddale (2010),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